

1.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747호 1998. 4. 1.

주요골자 및 개정이유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보험으로 하던 것을 5년 이상인 보험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내용

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9조 단서,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제8호나목·제12호다목, 제40조의2제1항제2호, 제4항, 제48조제4호·

제5호·제9호 단서, 제51조제2항, 제53조제2항 산식·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55조제2항제3호·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제5항·제6항, 제57조제4항, 제58조제5항·제6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제2항, 제62조제1항 후단·제2항 본문·제4항제3호·제7항, 제6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제2항 본문·제4항 본문 및 제3호·제5항, 제64조제2항 본문, 제65조제2항, 제67조제5항 제2호, 제69조 후단, 제73조제4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본문, 제78조제5호, 제79조제4항, 제84조제3항·제4항제1호 단서, 제85조제1항

본문·제2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2항제2호, 제90조제4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2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2항제2호, 제90조제4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제2항, 제97조제1항 본문, 제98조제2항제2호, 제106조제1항 본문·제7항, 제107조제2항 전단, 제109조 본문, 제110조제2항, 제113조제1항 본문, 제114조제2항 본문, 제116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제3항 본문, 제121조의2제2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제2항, 제130조제1항·제3항, 제131조제2항·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3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제3항, 제138조제1항·제2항, 제141조제1항, 제145조제2항, 제148조제4항, 제149조의2제3항·제6항, 제150조제2항·제5항제153조제4항제1호나목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제3호, 제155조제10항제1호 및 제4호나목·제13항 본문 및 제4호·제14항·제15항,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제162조제1항제3호 본문, 제163조제3항제4호·제5항제2호, 제164조제7항, 제16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165조제6항, 제169조 본문, 제170조, 제173조제1항·제2항제2호, 제175조의2제4항, 제179조제1항제8호, 제185조제1항, 제187조제3항·제6항 본문 및 단서, 제192조제1항 본문, 제193조제1항,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본문, 제199조제1항, 제200조

제1항 전단·제3항,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제1항·제6항, 제201조의3제1항·제2항, 제201조의4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호제1항, 제209조제1항·제2항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2조제1항 전단, 제213조제1항·제2항·제2항, 제214조제1항제4호·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7조 전단, 제222조, 제224조제1항 본문·제2항제1호 및 제3호·제3항 전단·제4항 후단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8호가목·제4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5조의2제6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2호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